

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일부개정법률안 (여기구의원 대표발의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산림청장이 선도 산림경영단지를 선정할 때 산림이 집단화된 지역, 입목의 축적, 임도시설 등을 고려하도록 함(안 제37조).
-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밀원수 확충을 위해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하여 육성할 수 있도록 함(안 37조의2).

II. 검토의견

1. 지정 기준·절차의 하위법령 위임근거 신설 필요 등(안 제37조의2)

- 안 제37조의2는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「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밀원식물 중 목본식물 확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을 밀원수 특화단지로 지정하여 육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- 그런데, 해당 밀원수 특화단지 지정은 지원·육성대상 선정의 성격을 가지는 지정이며, 이러한 지정의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, 지정기준이나 지정절차 등은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경우가 일반적임.¹⁾²⁾

- 한편, 안 제37조의2는 ‘목본식물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, 이는 「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2조제3호3)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를 법률에서 인용하는 것은 법체계상 타당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해당 용어를 하위법령에서 규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.
- 따라서, 안 제37조의2에 제2항을 신설하여 밀원수 특화단지 지정 요건·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하고, 목본식물의 정의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며, 하위법령 정비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안 제37조의2의 시행일을 공포한 날에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수정하는 안을 산림청과 협의하여 마련함.

<안 부칙 제37조의2 및 부칙에 대한 수정의견>

개 정 안	수 정 의 견
제37조의2(밀원수 특화단지의 지정)	제37조의2(밀원수 특화단지의 지정)
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밀원수(「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밀	① ----- ----- -----

1) 국회사무처, 「법제기준과실제(2024 개정증보판)」, p.352.

2) 현행법 제51조의2제3항의 경우에도 금강소나무림 등 특별수종육성권역 지정과 관련한 요건,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.
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51조의2(금강소나무림 등 특별수종육성권역의 지정·관리) ① 산림청장은 역사적·문화적·자원적 가치가 있는 금강소나무림 등 집중적인 보호·육성이 필요한 수종에 대하여 특별수종육성권역을 지정·관리할 수 있다.

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특별수종육성권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관할 시·도지사 및 산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후 지정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특별수종육성권역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3) 「제2조(밀원식물의 범위) 「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3호에서 “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”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.»

2. 목본식물: 동백나무, 두릅(민두릅을 포함한다), 패죽나무, 마가목, 매실나무, 모감주나무, 밤나무, 백합나무, 뽕나무(산뽕을 포함한다), 붉나무, 산딸나무, 산초나무, 쉬나무, 아까시나무, 오동나무, 옻나무, 음나무, 쥐뚫나무, 참죽나무, 층층나무, 칠엽수, 피나무, 헛개나무, 황벽나무, 황칠나무

개 정 안	수 정 의 견
원식물 중 목본식물을 말한다) 확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을 밀원수 특화단지로 지정하여 육성할 수 있다. <신 설>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	-----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----- ----- -----. ② 제1항에 따른 밀원수 특화단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부 칙 -----. 다만, 제37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- 그 밖에 체계·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임.

(전문위원 박 병 섭)